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가경정 제3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ㆍ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783,432,116	53,502,963
일반회계			1,324,057,667	39,721,730
특별회계			459,374,449	13,781,233
	140	기업특별회계	263,001,437	7,890,043
		상수도사업	86,294,867	2,588,846
		하수도사업	176,706,570	5,301,197
	7] [- 타특별회계	196,373,012	5,891,190
		공유재산관리	109,934,698	3,298,041
		의료급여기금	6,184,929	185,548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기금운영	1,446,916	43,40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244,902	7,347
		교통사업	41,216,764	1,236,503
		철도건설사업	11,716,659	351,500
		폐기물처리시설	7,549,990	226,500
		도시재정비촉진	1,281,662	38,450
		도시개발	4,243,385	127,302
		기반시설 설치	4,410,060	132,302
		도시재생	8,143,047	244,291

- 제 2 조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와 같다.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 제 3 조 2017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 제 4 조 2017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 제 5 조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617,154천원으로 한다.
 - (1) 일반예비비 13,000,000천원
 - (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617,154천원
- 제 7 조 2017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6,1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 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